공개

의안번호	제 55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3. 15. (제5차)

의결사항

㈜레드로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3. 15.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1. 의결주문

㈜레드로버의 제23기('18.1.1～'18.12.31.)부터 제24기('19.1.1.~'19.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과징금 부과안을 별지1, 별지2, 별지3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레드로버의 제23기('18.1.1～'18.12.31.)부터 제24기('19.1.1.~'19.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조치안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안
☆☆☆ (前 대표이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과징금 8.6백만원
★★★ (前 담당임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과징금 4.9백만원
□□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보고서 작성	과징금 135백만원
▲▲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보고서 작성	과징금 100백만원

나. 위반내용

1 ☆☆☆, ★★★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등 >

○ ㈜레드로버(이하 '회사')는 제23기('18.1.1.～'18.12.31.)부터 제24기('19.1.1.～'19.12.31.)까지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①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연결·별도: '18년 49,044백만원, '19년 15,949백만원) [위반동기 : 중과실]

-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 최초 적용시 보유중인 금융상품의 분류*1 및 평가손익*2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1 수익증권·출자금 및 프로젝트투자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각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당기손익으로 잘못 회계처리

- 당기순손실을 '18년 4,025백만원, '19년 4,186백만원 과대계상하고, 금융상품 계정을 '18년 45,019백만원, '19년 11,763백만원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음

2 □□회계법인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 >

○ □□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회사의 제23기('18.1.1.~'18.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18년 49,044백만원) [위반동기 : 중과실]

- 감사인은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 최초 적용시 보유중인 금융상품의 분류*1 및 평가손익*2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1 수익증권·출자금 및 프로젝트투자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각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당기손익으로 잘못 회계처리

- 당기순손실을 4,025백만원 과대계상하고, 금융상품 계정을 45,019백만원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3 ▲▲회계법인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 >

○ ▲▲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회사의 제24기('19.1.1.~'19.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①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별도: '19년 15,949백만원) [위반동기 : 중과실]

- 감사인은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 최초 적용시 보유중인 금융상품의 분류*1 및 평가손익*2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1 수익증권·출자금 및 프로젝트투자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각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당기손익으로 잘못 회계처리

- 당기순손실을 4,186백만원 과대계상하고, 금융상품 계정을 11,763백만원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2023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필(2023.2.20.)

다. 2023년 제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 심의필(2023.3.9.)

라. 관계법규(붙임)

(별지1)

㈜레드로버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 (㈜레드로버 前 대표이사)

○ 생년월일 : ’OO.O.OO.
○ 주 소 :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O

□ ★★★ (㈜레드로버 前 담당임원)

○ 생년월일 : ’OO.O.OO.
○ 주 소 : OOOOO OOO OOO OOOOO 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에 의하여,

○ 前 대표이사 ☆☆☆에 대하여 과징금 8,600,000원을 부과하고,

○ 前 담당임원 ★★★에 대하여 과징금 4,9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레드로버(이하 ‘회사’)는 제23기(2018.1.1.~2018.12.31.)부터 제24기(2019.1.1.~2019.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18년 49,044백만원, '19년 15,949백만원)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 최초 적용시 보유중인 금융상품의 분류*1 및 평가손익*2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1 수익증권·출자금 및 프로젝트투자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각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당기손익으로 잘못 회계처리

- 당기순손실을 '18년 4,025백만원, '19년 4,186백만원 과대계상하고, 금융상품 계정을 '18년 45,019백만원, '19년 11,763백만원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임권고,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4, 5

○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해야 함

○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해야 함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
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

○ 최초 인식 후에는 금융자산을 다음중 하나로 측정해야 함
⑴ 상각후원가
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⑶ 당기손익-공정가치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손익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⑴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는 경우
⑵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문단 5.7.5에 따라 그러한 투자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한 경우
⑶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로서 그러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⑷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일부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은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함
⑴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
⑵ 해당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별지2)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회계법인(제23기)

○ 대표이사 : OOO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 OOOO OO (OOO, OOOOOOOO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135,0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레드로버(이하 '회사')의 제23기('18.1.1.~'18.12.31.)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함

○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8년 49,044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23기('18.1.1.~'18.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 최초 적용시 보유중인 금융상품의 분류[*1] 및 평가손익[*2]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손실을 4,025백만원 과대계상하고, 금융상품 계정을 45,019백만원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1 수익증권·출자금 및 프로젝트투자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각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당기손익으로 잘못 회계처리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계감사기준」 200, 500 등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별표 8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등록취소,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별지3)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회계법인(제24기)

○ 대표이사 : OOO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
○ 본점 소재지 : OOOOO OOO OOO OOO (OOO, OO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100,000,000원을 부과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레드로버(이하 '회사')의 제24기('19.1.1.~'19.12.31.)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함

○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9년 15,949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제24기('19.1.1.~'19.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 최초 적용시 보유중인 금융상품의 분류[*1] 및 평가손익[*2]을 잘못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손실을 4,186백만원 과대계상하고, 금융상품 계정을 11,763백만원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1 수익증권·출자금 및 프로젝트투자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각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당기손익으로 잘못 회계처리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계감사기준」 200, 500 등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별표 8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등록취소,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붙임)

관 계 법 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 제>

③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삭 제>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4. <생 략>

②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5. <생 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주권상장법인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⑦ <생 략>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1.~6. <생 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20. <생 략>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③ <생 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5. <생 략>

③~⑦ <생 략>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지정방법 등) ①~③ <생 략>

④증선위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감사인 지정시 참작할 수 있다.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및 결합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검찰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4.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② <생 략>

③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조사) ①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재산상태의 조사

3. <생 략>

②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나.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감사반의 등록취소
2. <삭 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③ <삭 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 략>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삭 제>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①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⑥ <삭 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 ⑧ <생 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 ⑦ <생 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에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 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14. <생 략>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①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①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의2. <생 략>

4. 재무에 관한 사항

5. <생 략>

③~⑦ <생 략>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⑧ <생 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생 략>

③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 략>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 제>

②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② <생 략>

③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생 략>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9. <생 략>

④~⑥ <생 략>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1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법 제178조의2제1항의 행위와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나.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정보(법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각 미공개정보를 말한다) 또는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법 제178조의2제1항의 행위만 해당한다)

다.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라.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법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법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② 법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9조 및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법 제42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②~④ <생 략>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5. <생 략>

②~③ <생 략>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3. <생 략>

* 별표 제3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1.~4. <생 략>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다. <생 략>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6.~7. <생 략>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①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2. 29.>

1.~4. <생 략>

②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등록취소
2. 2년이하의 직무정지
3.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③<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생 략>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

4.1.1 문단 4.1.5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두 가지 사항 모두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⑴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⑵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4.1.2A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이하 “생략”)

4.1.4 금융자산은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하 “생략”)

5.2.1 최초 인식 후에는 금융자산을 문단 4.1.1~4.1.5에 따라 다음중 하나로 측정한다.
⑴ 상각후원가
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⑶ 당기손익-공정가치

5.7.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손익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⑴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는 경우(문단 6.5.8~6.5.14 참조. 그리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이자율위험의 포트폴리오 위험회피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89~94 참조)
⑵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문단 5.7.5에 따라 그러한 투자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한 경우
⑶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로서 문단 5.7.7에 따라 그러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⑷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문단 5.7.10에 따라 일부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

5.7.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은 문단 4.2.2나 4.3.5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이하 “생략”)
⑴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문단 B5.7.13~B5.7.20 참조)한다.
⑵ 해당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이하 “생략”)

□「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19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외화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감독기구에서 지급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등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제약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해당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발행자의 계약상 의무나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의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거래상대방이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이는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감리2국
연 락 처	02-2100-2693	02-3145-7320

fsc0793 /2023-05-11 09:40/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